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57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 : 허은아 · 황보승희 · 추경호

임이자・김상훈・金炳旭

김석기 · 서일준 · 한무경

정동만 · 최승재 · 김형동

김 웅·강대식·권영세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, 범죄물의 상당부분이 국외서버에 소재해 국내 행정력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. 피해자는 해외에서 본인의 영상물이 포르노처럼 소비되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,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.

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있으나, 국외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'접속차단' 조치는 2018년 17,248건, 2 019년 25,896건, 2020년 10월 현재 30,748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외서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

을 시사함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'국제공조점검단'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해외사업자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,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·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, 디지털성범죄물를 비롯한 마약·총포류 불법 거래,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	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
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
	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
	<u>사항</u>
<u>6.</u> ~ <u>8.</u> (생 략)	<u>7.</u> ~ <u>9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8
	호까지와 같음)